성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6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현행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구체적 기준마련 (안 제3조)

○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.

나.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의 형평성제고 (안 제4조, 제5조)

○ 지급기준

- 1년차 체납액 징수 : 1/100
 2년차 체납액 징수 : 3/100
 3년차 체납액 징수 : 5/100
- 도로,하천등 무단 점용 적발 제보 : 징수액의 5/100
- 창의적 제안 등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자 : 1건당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

○ 지급한도

- 1건당 30만원 ,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(계약직은 300만원)

다. 공적심사의 신뢰성 제고(안 제6조)

○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토록 신설함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문 대비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지방세법

나. 입법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다. 예산관련사항 : 해당 없음

라. 협의사항 : 규제개혁위원회

성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"지방세입"이라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

제3조(지급대상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(별정직, 기능직, 임시직,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.)
2.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3.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
②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·관허사업제한·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,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. 다만, 성주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

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조(지급기준)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.

1.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
2.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

3.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4.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("미등기 재산의 취득"이라 함은 "을"이 "갑"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"병"에게 매도하여 "갑"에서 "병"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"을"의 취득을 말한다)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
5. 납세의무 발생일(등기일 포함)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6. 도로, 하천부지,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
7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. 다만,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 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. 단,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

제5조(지급한도) ①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1.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(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)
2.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. 단, 제3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(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)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.

제6조(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)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성주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, 위원은 총무과장, 종합민원처리과장, 지역개발과장, 산림축산과장으로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징수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
2.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
3.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.

제7조(대장비치) ①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,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, 정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급신청)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제4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 결서를 첨부하여 성주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.

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급)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,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10조(환수)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
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

(단위 : 원)

징수자		세목	징수액				포상금 지급액	지급 계좌	지급 일자	담당 확인	비고
직	성명		계	1년차 체납세 징수	2년차 체납세 징수	3년차 이상 체납세 징수					

[별지 제2호 서식]

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

(단위 : 원)

부과자(제보자)		부과내역			포상금 지급내역			담당 확인	비고
주소	성명	부과일자	세목	세액	지급일자	지급액	지급계좌		

[별지 제3호 서식]

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 지급대장

(단위 : 원)

포상금 신청인		공적내용	포상금 지급 내역			담당확인	비고
주소	성명		지급일자	지급액	지급계좌		

〔별지 제4호 서식〕

포상금 지급 신청서

(단위 : 원)

구 분		건 수	세입금액	포 상 금	비 고
총 계					
과년도 체납세 징수	소 계				
	1년차 체납				
	2년차 체납				
	3년차 이상 체납				
숨은 세원 발굴	소 계				
	미등기 재산 취득				
	탈루 세원 발굴				
	도로, 하천, 공유수면 무단 점용				
제안 및 제도개선					

첨부 : 1.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사본 1부.
2. 숨은세원 발굴 과징대장 사본 1부.
3. 제안 및 제도개선 내용 1부.

년 월 일

신청자 소 속
직 성명 (인)

성주군수 귀하

[별지 제5호 서식]

징수포상금 심의 의결서

<table>
<tr><td colspan="8">1. 심의할 사항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2">신 청 자</td><td colspan="4" rowspan="2">징 수 사 항</td><td rowspan="2">신청액</td><td rowspan="2">지급계획</td></tr>
<tr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>성 명</td><td>과세년도</td><td>징수일</td><td>세 목</td><td>징수액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8">성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8조에 의거 성주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td></tr>
<tr><td colspan="8">2. 심의 결과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심 의 위 원</td><td rowspan="2" colspan="4">심 의 의 견
(“가”. “부”)로 표시</td><td rowspan="2" colspan="2">서 명</td></tr>
<tr><td>직 명</td><td>성 명</td></tr>
<tr><td>위원장</td><td></td><td colspan="4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위 원</td><td></td><td colspan="4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위 원</td><td></td><td colspan="4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위 원</td><td></td><td colspan="4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위 원</td><td></td><td colspan="4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위 원</td><td></td><td colspan="4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종 합 의 견</td><td colspan="4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/table>

〔제4호 서식 부표〕

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

(단위 : 원)

징수자		징수월일	체납(징수) 내역					체납자		포상금 신청액	담당 확인	비고
직급	성명		년도	과세일	고지서 번호	세목	징수액	주소	성명			

〔제4호 서식 부표〕

숨은세원 발굴 과징대장

(단위: 원)

부과자(제보자)		세원 발굴 내역					포상금 신청액	담당 확인
직급(주소)	성명	세목	부과물건	부과일	징수액	수납일자		